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명예훼손 보도, 반론 및 조 건부 추후보도로 합의

A신문과 B신문은 모 슬레이트 철거업체 관계자의 말을 빌려 '신청인 면사무소 주차장 조성공사장 슬레이트 철거업체 선정을 위해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무슨 영문인지 견적서가 조작되어 결국 선정에 실패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면사무소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 과정에 부 정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면사무소는 슬레이트 철거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 선정했고, 해당 철거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해 편파보도를 했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중재부는 당시 공사현장 토목기사가 자신이 해당 업체의 견적서를 받았고 업체와 협의해 견적서를 수정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신청인 면사무소 관계자들이 경찰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일단 신청인 면사무소의 입장을 충분히 담은 반론을 보도하고 추후 신청인 면사무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밝혀질 경우 피신청인들이 이 사실을 재차 보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토론 프로그램 패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발언 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

D방송은 정치평론가 등의 패널이 출연해 의견을 개진하는 뉴스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이 회장으로 있던 한 대형 기업이 IMF 시절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을 따르지 않고 분식회계와 자금횡령 등을 일삼아 해체에 이르게 됐으며, 신청인의 법정구속도 기업이 해체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정치평론가의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없으며, 정부 지시에 따른 뒤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원인이 돼 기업이 해체됐고, 신청인의 법정구속과 기업 해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중재부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외부 출연진 발언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과연 전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해당 패널의 발언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정정하고, 마찬가지로 기업 해체 원인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도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반론으로 다루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양 당사자에게 권유했다. 양 당사자가 중재부 권유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공익적 목적의 보도라도 일부 허위 사실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조정

C인터넷 매체는 보조출연기획사인 신청인 회사가 보조출연자에게 급여표를 제공하지 않고, 드라마 제작사보다 촬영시간을 적게 기록하여 출연료를 적게 지급하고 수수료를 과도하게 공제하고 있으며,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단협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회사는 모든 출연자에게 매월 급여명세서를 제공하고 있고 수수료는 노사 단협에서 정한 요율을 공제하고 있으며, 촬영현장 상황에 따라 기획사와 제작사가 기록한 촬영시간이 상이할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단협 미이행에 따른 노조의 고소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았으며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수수료 요율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정이 필요하고, 조정대상기사에 신청인 회사의 입장이 일부 반영되어 있으나, 출연자별 급여명세서 제공을 비롯한 신청인 회사의 보조출연자 대우에 관한 사항 및 노사 갈등 상황 등에 대한 신청인 회사의 입장이 미흡하게 반영되어, 독자들이 신청인 회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게재를 권고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의혹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반론보도로 조정성립

E신문은 신청인이 F종교 교인이란 의혹을 받아 모 지방자치단체 홍보대사직을 사퇴했고, 현재 신청인이 이사장으로 있다는 단체 및 서예전시관도 실체가 없는 등 기타 경력에도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F종교의 교인이 아니고, 현재 작품 특성 상 자택에서 단체 및 서예전시관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F종교 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고,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였으나 단체의 사무실 및 서예전시관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에는 신청인이 F종교 교인이라고 확정적으로 보도된 것은 아니고, 홈페이지에 단체 및 전시관의 주소를 고치지 않은 신청인의 과실이 있으므로 반론보도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